

CLFA

한국대부금융협회

(100-704)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13층 / TEL 02)3487-5800/ FAX 02)6670-9650 / WWW.CLFA.ORG.KR

문서번호 : 기획조사-2014-78

발신일자 : 2014. 11. 10.

수 신 : 수신처 참조

참 조 :

제 목 : 사고사망자 채무유예감면제도 운영협약 가입 협조 요청

1. 서민금융 발전에 애쓰시는 귀 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협회는 대부금융이용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신용회복지원을 통한 경제적 희생기회 마련을 위하여 지난 2012년 9월 1일부터 “사고·사망자 채무유예 감면제도 운영협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대부이용자에 대한 구제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고사망자 채무유예감면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약 체결 대 부업체의 확대를 요청하였습니다.

4. 이에 협약 관련 자료 및 금융감독원 공문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본 협약의 운영에 각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붙임 : 1. 사고사망자 채무유예감면제도 운영안 및 가입신청서. 1부.

2. 사고사망자 채무유예감면제도 운영협약 및 운영세칙. 1부.

(붙임 생략, 협회 홈페이지 회원전용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3. 금융감독원 관련 공문. 1부.



※ 문의 : 대부금융협회 기획조사부 한성택 주임(02-3487-5800 (내선 115)). 끝.

한국대부금융협회장



● 수신처 : 가온인베스트먼트대부 외 277개 전 회원사 대표이사 귀하

사고·사망자 채무유예·감면제도 운영안

1 운영목적

과다채무 및 경제력상실 등으로 채무불능상태에 처한 한계 채무자에 대한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 기회를 마련하여 정상적인 경제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2 운영방안

협회의 사고·사망자 채무유예·감면제도 운영협약에 따른 사고자 채무상환유예제도 및 사망자 채무감면제도를 각 대부 금융사가 자사 실정에 맞게 심사 기준을 정하여 운영.

1. 사고자 채무상환유예제도

□ 개요

대부금융사를 이용하는 고객 또는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채무변제가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연체가 계속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대출상환금의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

□ 운영안

○ 지원대상 : 3회 이상 대출금 납입 실적이 있는 고객 중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2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자

- 채무자 본인이 대출금 상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소득 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자
- 채무자 본인이 대출금 상환 중 상해, 정신질환 등 질병으로 인한 치료 중인 자로서 소득 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자
- 대출금 상환 중 주 소득자인 가족**이 사망한 자

* 불의의 사고라 함은 천재지변(태풍, 홍수, 지진 등) 또는 불가피한 사고(화재 등)와 같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건으로 재산상의 심각한 피해를 유발함을 말함.

** 지원 대상에서 가족이라 함은 대출 실행일 이전 3개월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 등본 상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직계 가족을 지칭.

○ 구비서류

- 사고 또는 질병 : 사고경위서 또는 진단서, 병원 입원내역 등 사고 또는 질병 사실 증명 서류
- 주 소득자 사망 :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류 및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증명 서류

○ 지원내용 : 1)일정기간* 대출상환금 납부 유예** 및 유예기간 중 이자 면제 또는 2)채무액의 일부 또는 전부 감면

* 구체적 유예 기간은 회사 자율 결정(최소 2개월 이상 유예)

** 대출상환금 납부 유예가 확정된 고객은 유예기간 종료 후 잔존 상환 기간에 유예기간 동안의 상환금을 안분하여 상환

지원 대상	구비서류	지원내용
- 3회 이상 대출금 납입 실적이 있는 고객 중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2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자 · 채무자 본인이 대출금 상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소득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자 · 채무자 본인이 대출금 상환 중 상해 또는 정신 질환 등 질병으로 인해 입원 등의 사유로 소득 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자	사고경위서 진단서 병원 입원내역	대출상환금 납부 유예
- 3회 이상 대출금 납입 실적이 있는 고객 중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2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자 · 대출금 상환 중 주 소득자인 가족이 사망한 자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2. 사망자 채무감면제도

□ 개요

대부금융사를 이용하는 고객이 사망한 경우 대출 상환금을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하여 주는 제도

□ 운영안

○ 지원대상

- 대출실행 이후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채무자의 가족인 자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류 및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증명 서류

○ 지원내용 : 채무원금 기준 1/2 이상* 및 이자 전액 면제

지원 대상	구비서류	지원내용
- 대출실행일 이후에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서 신청인의 관계증빙서류	채무원금 전액면제 또는 일부면제*

* 구체적인 면제 비율은 회사 자율 결정

3 절차



- 신청 : 채무자 본인 직접 신청
다만 채무자 사망 시 가족 대리 신청 가능
- 상담 : 담당자가 채무자 신청서류를 토대로 대면 또는 전화 상담 실시
- 심사 및 결정: 회원사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및 결정
- 반영 : 결정 사항 채무자에게 통보 및 운영

사고·사망자 채무유예·감면제도 운영협약 가입신청서

한국대부금융협회 귀중

우리 회사는 대부금융이용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신용회복지원을 통한 경제적 회생기회 마련을 위하여
사고사망자 채무유예감면제도 운영협약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 붙임 : 업무담당자 지정통보서 1부.

20 년 월 일

주식회사 0000대부

대표자

(인)

업무담당자 지정(변경)통보서

한국대부금융협회 귀중

사고·사망자 채무유예·감면제도 운영협약 제5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자를 신용회복지원업무담당자로 지정(변경)하였기에
통보합니다.

- 다 음 -

성 명	
부 서 / 직 책	/
전 화 / FAX	/
E - M a i l	

20 년 월 일

주식회사 0000대부

대표자

(인)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금융감독원

수신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

(경유)

사본수신

제목 사고·사망자 채무 유예·감면제도 활성화를 위한 협조 요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협회는 `12.9월부터 사고자 채무유예·감면제도* 및 사망자 채무 감면제도**를 도입·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채무변제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대부 상환금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

** 채무자가 사망시 대부 상환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해주는 제도

3. 시행 초기 26개 대부업체가 귀 협회와 '사고·사망자 채무유예·감면제도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동 제도에 참여해 왔으나, 시행 이후 4개 대부업체만이 추가로 동 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부업체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14.8월 현재 30개사 참여).

4. 따라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채무변제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대부이용자에 대한 구제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고·사망자 채무유예·감면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 협약 체결 대부업체가 확대될 수 있도록 대부업체에 대한 귀 협회의 적극적인 독려를 당부드립니다. 끝.

금융감독원장



담당부서 대부업검사실 (검사기획팀)

선임검사역 마성한

팀장

엄주동

실장

전결 2014.10.08.
안응환

합의자

시행 대검기획 -00109 (2014.10.08.)

우 150-7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http://www.fss.or.kr>

전화번호 02-3145-8272 팩스번호 02-3145-8274

/ shma@fss.or.kr

/ 비공개(7)